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20가단1275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0. 8. 19.

판결 선고 2020. 9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9. 28.부터 2010. 9. 15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 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에림

별지